

#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14.
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 11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9. 11. 19.

다. 상정일자

- 제14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09.12. 1) 상정, 심사, 보류
- 제149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위원회(2009.12. 9) 상정, 심사, 의결(수정)
- 제149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위원회(2009.12.14) 상정, 심사, 의결(번안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 제안설명자 :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염리제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### 1) 건립배경

- 마포구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건립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염리제2공영주차장 옥상 공간을 활용 체육시설을 증축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생활을 경영하도록 도모하고자 함.

- 새로운 부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 매입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기존 주차장을 활용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및 향후 체육시설 설치공간 확충 파급효과에 기여하고자 함.
- 또한 영리제2공영주차장부지에 영리초등학교 학교체육관 건립 검토 요구에 따른 주차장 옥상공간 활용 체육시설 증축으로 학교 체육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) 영리제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계획

- 사업개요

소재지	지목	토 지 (㎡)	건 물 (㎡)					소유자
			층별	기 존	증 축	합계	용도	
마포구 영리동 174-3	주 차 장	2,483.3	1층	2,136.36	+15.95 (엘리베이터설치)	2,152.31	주차장	
			2층	2,133.37	+15.95 (엘리베이터설치)	2,149.32	주차장	
			3층	203.17	+1,546.93	1,750.1	체육 시설	
			계	4,472.90	1,578.83 (477.5평)	6,051.73		

- 주요추진사항

- 건립계획 수립(구청장 방침) : 문화체육과-10754(2009.6.12)
- 변경계획 수립(구청장 방침) : 문화체육과-20804(2009.11.12)
- 타당성 검토(구청장 방침) : 문화체육과-20815(2009.11.12)

## 3) 건립재원 확보방안

- 건립재원은 총 사업비 5,184백만원 중
  - 시비 1,661백만원
  - 구비 1,023백만원 (특별회계보전)
  - 기타 (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) 2,500백만원으로 확보하여 건립하고 함.

○ 내용·재원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체 육 시 설			비 고	
	계	2009년	2010년		
내 역 비	계	5,202	18	5,184	
	설계·용역비	245	18	227	구조안전진단용역비 설계비, 감리비, 소방감리
	공사비	3,789		3,789	구조물보강, 골조공사, 마감공사, 설치비
	기자재구입	130		130	체육용품 구입비
	기 타	1,038		1,023(15)	특별회계보전(하수도원인자부담금)
재 원 비	계	5,202	18	5,184	
	시비	1,661		1,661	
	구비	1,041	18	1,023	
	기타	2,500		2,500	마포구자원회수시설기금

4) 향후 추진계획

- 2010. 1. ~ 2. :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
- 2010. 3. ~ 6. : 공사발주 및 착공
- 2010. 12 : 완공

다. 근거법령

- 주차장법, 주차장법시행령, 주차장법시행규칙
- 건축법, 건축법시행령, 건축법시행규칙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( 이국환 전문위원 )

-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접해 있는  
영리초등학교 학생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영리동 174-3호  
영리제2공영주차장내 3층 옥상 공간을 활용 1,546.93㎡의 체육시설  
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2010. 3월 착공하여 2010. 12월 준공  
예정임.

-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배드민턴 7코트에 농구, 배구장겸용 체육관 및 탁구,요가,단전호흡,체조,발레 등의 다목적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,
- 건립재원은 총 5,202백만원이며, 시비보조금 16억 6,100백원, 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2,500백원, 구비 1,041백원으로 충당하도록 계획 되었으며,
- 주차장 부지내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총 연면적의 30%내에서 운동시설 설치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,
-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 및 체육시설 설치 입지가 적정하며, 주민들의 적정한 수요가 있는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한정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후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것이 (원칙적으로 지켜지는)관례이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도 예산과 함께 제출되었음.

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중요한 사업일수록 규정과 절차는 지켜야 사업추진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만큼,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(번안) 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 타 : 없음